

지자체 설명회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시행

2014. 5. 8(목)~9(금)

차 례

I. 평가개요

II. 지표별 자료구축방법

III. 질의응답

I . 평가개요

I. 평가개요

1. 평가의 배경 및 목적

저출산·고령화, 경기침체, 기후변화 등 계획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성장 중요

국민행복시대를 맞아 기초생활서비스의 균등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생활인프라 공급 중요

지자체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전한 도시정책을 유도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모니터링제도 필요

2. 평가의 법적 근거

▷ 국토계획법 제3조의2(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다.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조의4(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기준 및 절차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받은 자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평가를 실시한다.

I. 평가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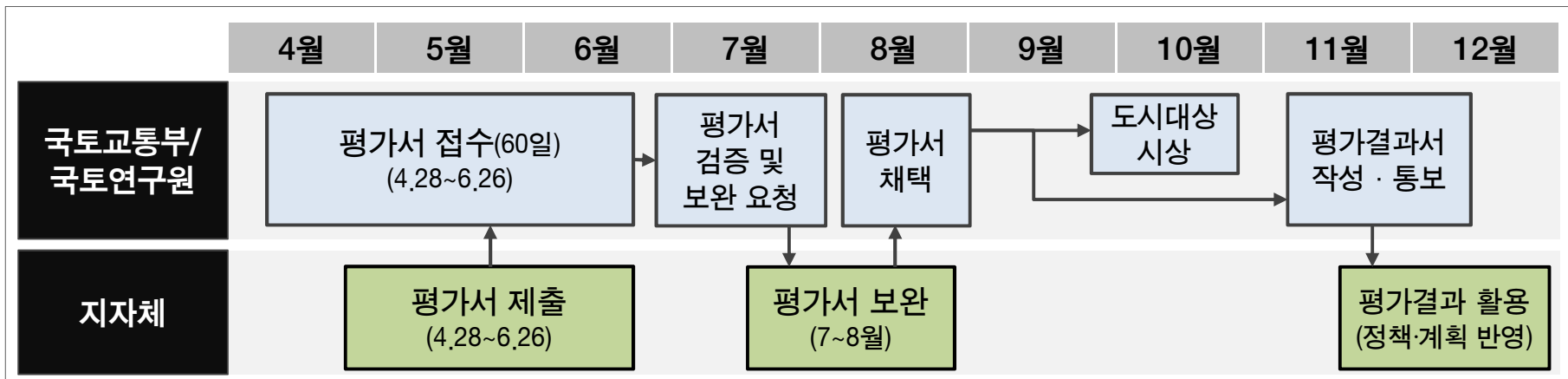
3. 평가대상

▷ 전국 지자체(시·군) 대상 (특·광역시의 경우 자치구)



4. 평가절차 및 일정

- (평가서 접수) '14. 4.28(월)~6.26(목) (60일)
- (평가서 검증 및 보완) '14. 7~8월
- (도시대상 시상) '14. 10월
- (평가결과서 통보) '14. 11~12월



I. 평가개요

5. 평가결과서(2014년도) 작성 · 공표

▪ 종합분석 및 평가결과 도출(예시)



▪ 평가결과보고서(2014년도) 작성 · 공표(예시)

〈평가결과보고서 작성 예시〉

○○시 평가결과					진단의견
부문	지표명	지표값	표준점수 (Z-score)	등급	
토지 이용	개발행위의 시가화구역 집중정도	98.7%	+1.345	2등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내 토지의 절약적 이용정도: 토지이용의 고도화 · 합리화 구현을 위해 주상공지역 내 미분양토지(2012년 기준 71천㎡)를 중심으로 선개발 할 필요 토지수요량 적정 정도: 목표인구 도달률 대비 용도전환 면적이 과소한 것은 합리적 토지이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인구변동과 연계한 용도지역 변경 필요
	도시내 토지의 절약적 이용정도	13.7%	-1.589		
	토지수요량 적정정도	43.7%	-2.102		
종합등급			3등급		
○○시 종합 검토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이용 부문) 비교적 효율적 · 계획적 토지이용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으나 토지의 절약적 이용 및 계획적 용도전환이 필요함 (문화 · 경관 부문) 1인당 문화 · 체육시설 면적과 공원 면적이 전국 평균에 비해 많이 낮으므로 공공공지, 주민센터, 미분양토지 등을 활용한 적극적 시설 공급 필요 			

II. 지표별 자료구축방법

II. 평가지표

※ 평가지표(30개)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지침 별표1 참조)

부문	평가지표	평가대상	분석자료
토지 이용 (4개)	개발행위의 시가화구역 집중 정도	전체 개발행위허가면적 대비 시가화구역내 개발행위허가면적	-개발행위허가면적 -시가화구역
	도시내 토지의 절약적 이용 정도	주·상·공지역으로 전환면적 대비 미이용 토지면적	-주상공 전환면적 -주상공내 미이용 토지면적
	토지수요량 적정 정도	목표인구 도달정도 대비 용도지역 전환 정도	-목표인구 도달치 -용도지역 전환정도
	비시가화 지역내 토지의 계획적 공급 정도	총형질변경면적 대비 계획적 공급 면적	-비시가화지역 -형질변경 면적 -계획적 공급면적
산업· 경제 (3개)	경제활동 활력 정도	경제활동 참가율	-경제활동 참가율
	기업 설립 정도	인구 천명당 사업체수	-인구 천명당 사업체수
	재정자립 정도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
환경 보전 (4개)	상하수도 보급 정도	상·하수도 보급률	상·하수도 보급률
	산림지역 보전 정도	산림지역(경지 포함) 감소비율	산림지역 -경지지역
	온실가스 배출 정도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비율	-온실가스 배출량
	쓰레기 재활용 정도	생활폐기물 재활용 비율	-생활계 폐기물 발생량 -생활계 폐기물 재활용량
문화· 경관 (4개)	문화체육시설 확충 정도	1인당 문화체육시설 연면적	-문화체육시설 연면적
	공원녹지 조성 정도	1인당 공원(친수공간 포함) 조성면적	-공원 조성면적 -친수공간 조성면적
	주민만남의장 조성 정도	1인당 커뮤니티회랑 조성면적	-보행자전용도로, 산책로, 광장, 쌈지공원 등 주민접촉공간
	가로경관 개선 정도	총 가로연장 대비 정비거리 연장	-가로연장 -가로경관 정비내역

※ 생활인프라 평가대상(13개 지표)은 음영 표시

II. 평가지표

※ 평가지표(30개)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지침 별표1 참조)

부문	평가지표	평가대상	분석자료
교통 (4개)	대중교통 이용편리성 정도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교통약자 안전성 제고 정도	전체예산 대비 교통약자를 위한 자원투자 비율	-교통약자 투자재원 항목
	교통사고 안전성 정도	자동차천대당 교통사고발생건수	-자동차천대당 교통사고 발생건수
	적정 주차공간 확보 정도	승용차 등록대수 당 주거지역내 주차면수	-주거지역 주차면수
주택 (4개)	주택의 노후 정도	노후주택률(총 주택수 대비 노후주택 수)	-건축한 지 30년 이상 된 주택비율(단독, 공동)
	노후주택의 개선 정도	총 노후주택수(단독, 공동)대비 개축·수선·증축 호수	-총 노후주택수 대비 개축·수선·증축 호수(리모델링, 재개발 재건축 포함)
	최저주거기준 확보 정도	전체 가구수 대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수
	저소득가구의 주거안정 정도	전체 가구수 대비 소형주택, 임대주택 비율	-소형주택수(60㎡이하), -임대주택수
사회·복지 (4개)	보육원·유치원 공급 정도	전체 영유아, 아동수 대비 공립 보육원, 유치원 수용인원	-공립보육원 수용 영유아수 -공립유치원 수용 아동수
	초등학교 공급 정도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
	노인전문시설 공급 정도	전체 노인수 대비 공립노인전문요양원 수용인원	-공립노인전문요양원 수용 인원
	의료서비스수준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수	-해당지역 주민수/총의사수
방재·안전 (3개)	자연재해 피해 정도	풍수해 발생에 따른 재산피해액 및 인명피해 정도	-침수면적당 재산피해액 -침수면적당 인명피해액
	재해예방시설 확충 정도	재해예방시설 설치 및 운영재원 비율	-재해예방시설
	범죄로부터의 안정성 정도	인구 천명당 범죄발생건수	-인구 천명당 범죄발생건수

※ 생활인프라 평가대상(13개 지표)은 음영 표시

II. 평가지표

※ 평가서 작성 시 주의사항

1. 표지의 지표값은 자동입력되므로 수정 금지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2014)			
시군구명			
부문	지표	최종값	단위
1.토지이용	①개발행위의 시가화구역 집중 정도	0	%
	②도시내 토지의 절약적 이용 정도	0	%
	③토지수요량 적정 정도	0	%
	④비시가화 지역내 토지의 계획적 공급 정도	0	%
2.산업경제	①경제활동 활력 정도	0	%
	②기업 설립 정도	0	개소
3.환경보전	③재정자립 정도	0	%
	①상하수도 보급 정도	0	%
	②산림지역 보전 정도	0	%
	③온실가스 배출 정도	0	%
4.문화경관	④쓰레기 재활용 정도	0	%
	①문화체육시설 확충 정도	0	m ² /인
	②공원녹지 조성 정도	0	m ² /인
	③주민만남의장 조성 정도(면적)	0	m ² /인
5.교통	④가로경관 개선 정도	0	%
	①대중교통 이용편리성 정도	0	%
	②교통약자 안전성 제고 정도	0	%
	③교통사고 안전성 정도	0	건수
6.주택	④적정 주거공간 확보 정도	0	%
	①주택의 노후 정도	0	%
	②노후주택의 개선 정도	0	%
	③최저주거기준 확보 정도	0	%
7.사회복지	④저소득가구의 주거안정 정도	0	%
	①보육원·유치원 공급 정도	0	%
	②초등학교 공급 정도	0	인
	③노인전문시설 공급 정도	0	%
8.방재안전	④의료서비스수준	0	인
	①자연재해 피해 정도(재산피해)	0	천원
	②자연재해 피해 정도(인명피해)	0	인
	③재해예방시설 확충 정도	0	%
	④범죄로부터의 안정성 정도	0	건수

부문	1.토지이용	
지표	①개발행위의 시가화구역 집중 정도	
평가대상	전체 개발행위허가면적 대비 시가화구역내 개발행위허가면적	
분석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발행위허가면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개발사업, 재개발, 재건축, 관광단지조성 등 타 법에 의한 사업 준공면적 (도시계획시설 사업 제외)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 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이 준공된 대지면적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 제2호에 따른 '공작물 설치'가 준공된 대지면적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 제3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 •시가화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분석기준	2011~2012년 기준	
자료출처	개발행위허가대장, 도시계획현황	
구분	개발행위 전체면적(m ²)	시가화구역내 면적(m ²)
	사업 면적	개발행위 면적
	소계 (A)	소계 (B)
계		(B/A)*100
2011년		
2012년		

3. 지표별로 근거자료 목록을 작성하고, 모든 근거자료는 파일로 첨부

2. 각 시트별로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 기재

총괄담당	직 급
실국명	부서명
연락처	이메일

작성일자	직 급
작성부서	부서명
작성인	이메일

II. 평가지표

1. 토지이용부문 (①개발행위의 시가화구역 집중 정도)

평가대상	전체 개발행위허가면적 대비 시가화구역내 개발행위허가면적
분석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발행위허가면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개발사업, 재개발·재건축, 관광단지조성 등 타 법에 의한 사업 준공면적 (도시계획시설 사업 제외)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 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이 준공된 대지면적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 제2호에 따른 ‘공작물 설치’ 가 준공된 대지면적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 제3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 ▪시가화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분석기준	2011~2012년 기준
자료출처	개발행위허가대장, 도시계획현황

구분	개발행위 전체면적(m ²)			시가화구역내 면적(m ²)			계
	사업 면적	개발행위 면적	소계 (A)	사업 면적	개발행위 면적	소계 (B)	(B/A)*100
계							
2011년							
2012년							

II. 평가지표

1. 토지이용부문 (② 도시내 토지의 절약적 이용 정도)

평가대상	주상공지역으로 전환면적 대비 미이용 토지면적
분석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상공지역 면적 ▪ 주상공지역 내 미이용 토지면적 - 사업지구의 경우 : 가처분 토지중 분양되지 않은 토지 - 지목상 전, 답, 과수원, 임야, 잡종지, 목장, 양어장, 광천지, 염전, 묘지
분석기준	2012년 말 기준
자료출처	공시지가

구분	용도지역 지정현황(m ²)				주상공내 미이용토지(m ²)			계
	주거	상업	공업	소계 (A)	미분양 토지	비도시적 이용토지	소계 (B)	(B/A)*100
2012년								

II. 평가지표

1. 토지이용부문 (③ 토지수요량 적절 정도)

평가대상	목표인구 도달정도 대비 용도지역 전환정도
분석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인구 도달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 기준년도가 2006년 이전인 도시기본계획상 2010년 목표인구 - (B) 2010년 실제인구(인구총조사 기준) ▪ 용도지역 전환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 기준년도가 2006년 이전인 도시기본계획상 2010년 시가화예정용지 - (D) 기준년도에서 2010년 사이 용도지역 전환면적
분석기준	2010년 말 기준
자료출처	도시기본계획(도시기본계획이 없는 시군의 경우 도시관리계획상 중기계획)

구분	목표인구 (A)	실제인구 (B)	인구도달률 (E) =(B/A)*100	토지 수요량(m ²) (C)	용도지역 전환면적(m ²) (D)	용도전환률 (F) =(C/D)*100	인구도달대비 용도전환률 =(F/E)*100
2010년							

II. 평가지표

1. 토지이용부문 (④ 비시가화 지역 내 토지의 계획적 공급 정도)

평가대상	총 형질변경(비시가화지역내) 면적 대비 계획적 공급 면적
분석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시가화지역 -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형질변경면적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 제3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 ▪ 계획적 공급면적(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사업) - 기반시설부담구역, 준산업단지, 공장유도지구, 특별건축구역, 성장관리구역,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개발사업 등
분석기준	2011~2012년 기준
자료출처	지자체

구분	비시가화 구역내 형질변경 면적 (m ²) (A)	비시가화 구역내 계획적 공급면적 (m ²) (B)	계획적 공급정도 (B/A)*100
계			
2011년			
2012년			

II. 평가지표

2. 산업 · 경제부문 [① 경제활동 활력 정도]

평가대상	경제활동 참가율
분석자료	▪경제활동 참가율
분석기준	2012년 말 기준
자료출처	통계청

구분	경제활동참가율
2012년	

2. 산업 · 경제부문 [② 기업 설립 정도]

평가대상	인구 천명당 사업체수
분석자료	▪인구 천명당 사업체수
분석기준	2012년 말 기준
자료출처	통계청

구분	인구 천명당 사업체수
2012년	

II. 평가지표

2. 산업 · 경제부문 [③재정자립 정도]

평가대상	재정자립도
분석자료	▪재정자립도
분석기준	2012년 말 기준
자료출처	통계청

구분	재정자립도
2012년	

II. 평가지표

3. 환경보전부문 (①상하수도 보급 정도)

평가대상	상하수도 보급률		
분석기준	2012년 말 기준		
구분	상수도보급률 (A)	하수도보급률 (B)	상하수도 보급률 =(A+B)/2
2012년			

3. 환경보전부문 (②산림지역 보전 정도)

평가대상	산림지역(경지 포함) 감소비율		
분석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림지역: 산림청 산림기본통계상 산림지역 면적 ▪경지지역: 지자체 통계연보상 경지지역 면적(논, 밭 면적) 		
분석기준	2011~2012년 기준		
구분	2011년 (A)	2012년 (B)	변화율 =[(B-A)/A]*100
계			
산림면적(m ²)			
경지면적(m ²)			

II. 평가지표

3. 환경보전부문 (③ 온실가스 발생 정도)

평가대상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비율		
분석기준	2011년~2012년 기준		
자료출처	통계청, 한국환경공단, 국립환경과학원		
구분	2011년 (tCO ₂ eq) (A)	2012년 (tCO ₂ eq) (B)	변화율 = [(B-A)/A]*100
계			

3. 환경보전부문 (④ 쓰레기 재활용 정도)

평가대상	생활폐기물 재활용 비율		
분석자료	■ 생활폐기물 발생량, 생활폐기물 재활용량		
분석기준	2012년 기준		
자료출처	통계청		
구분	생활폐기물 발생량 (톤/일) (A)	생활폐기물 재활용량 (톤/일) (B)	생활폐기물 재활용 정도 = (B/A)*100
2012년			

II. 평가지표

4. 문화·경관 부문 (① 문화체육시설 확충 정도)

평가대상	1인당 문화체육시설 연면적
분석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기반시설 : 공공도서관, 등록박물관, 등록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집 공공체육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분석기준	2012년 말 기준
자료출처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전국공공체육시설현황

구분	인구 (A)	문화체육시설 연면적 (㎡) (B)	1인당 문화체육시설 연면적 (㎡/인) (=B/A)
2012년			

II. 평가지표

4. 문화·경관 부문 (②공원 조성 정도)

평가대상	1인당 공원(친수공간 포함) 조성 면적
분석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원 조성면적 : 생활권공원 및 주제공원(도시공원법 제 15조) 친수공간 조성면적 : 소하천이상(국가하천, 지방하천 포함) 하천구역을 친수공간으로 조성한 면적 모든 자료는 사업계획서, 사진, 동영상 등을 첨부하고, 필요한 경우 실사 실시 ※하천구역 : 제방부지, 제외지에 이르는 구간

구분	인구 (A)	공원 면적 (m ²) (B)	친수공간 면적 (m ²) (C)	계(D) (=B+C)	1인당 공원 조성 면적 (m ² /인) (=D/A)
2012년					

II. 평가지표

4. 문화·경관 부문 (③주민만남의 장 조성 정도)

평가대상	1인당 커뮤니티회랑 조성면적
분석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커뮤니티 회랑 : (면적) 광장(교통광장 제외), 생활권공원(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연장) 보행자전용도로, 산책로(탐방로) -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것 우선 - 도시계획시설은 아니지만 공공에서 조성한 경우 사업계획서(사진, 동영상 등 포함) 첨부 - 필요한 경우 실사 실시
분석기준	2012년 말 기준
자료출처	지자체

구분	지표값		
인구 (A)			
커뮤니티회랑 면적 (㎡) (B)		1인당 커뮤니티회랑 면적(=B/A)	
커뮤니티회랑 연장 (m) (C)		1인당 커뮤니티회랑 연장(=C/A)	

II. 평가지표

4. 문화·경관 부문 (④가로경관 개선 정도)

평가대상	총 가로연장 대비 정비거리 연장
분석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로연장 :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모든 도로(보행자도로 포함)의 연장 ▪가로경관 정비내역 - 간판 및 가로 시설물 등 디자인사업을 통하여 가로경관 및 미관을 증진시킨 내역 - 단, 가로등, 버스정류장 등 단일 시설물 정비는 제외 - 모든 자료는 도면, 사진, 동영상 등을 첨부하고, 필요한 경우 실사 실시
분석기준	2011~2012년 기준
자료출처	지자체

구분	도시계획도로 연장 (A)	정비거리 연장 (B)	가로 정비율 =(B/A)*100
계			
2011년			
2012년			

II. 평가지표

5. 교통 부문 (① 대중교통 이용편리성 정도)

평가대상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분석기준	2012년 말 기준	
자료출처	국가교통 DB, 교통안전공단	
구분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2012년		

5. 교통 부문 (② 교통약자 안전성 제고 정도)

평가대상	전체예산 대비 교통약자를 위한 자원투자 비율		
분석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통약자 투자재원 항목 - 저상버스 구입 및 운영,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콜시스템 구축 및 운영, 노약자 교통편의 정보 프로그램의 운영 등 노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투자한 재원 		
분석기준	2011~2012년 기준		
자료출처	지자체		
구분	지자체 총 재원 (백만원) (A)	교통약자를 위한 투자 재원 (백만원) (B)	투자비율 =(B/A)*100
계			
2011년			
2012년			

II. 평가지표

5. 교통 부문 (③교통사고 안전성 정도)

평가대상	자동차 천대당 교통사고발생건수	
분석기준	2012년 기준	
자료출처	통계청	
	구분	천대당 교통사고 발생건수
	2012년	

5. 교통 부문 (④적정 주차공간 확보 정도)

평가대상	승용차 등록대수 당 주거지역내 주차면수		
분석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면수 - 공공에서 조성한 주차장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주차장 우선 - 관리계획 결정은 되지 않았으나 공공에서 조성한 주차장(사업계획서 첨부) - 공공에서 관리하는 노상주차장(도면 표시와 사진 첨부) - 모든 자료는 도면, 사진, 동영상 등을 첨부하고, 필요한 경우 실사 실시 ▪주거지역 : 전용주거지역(1종 · 2종), 일반주거지역(1종 · 2종 · 3종), 준주거지역 		
구분	승용차 등록대수 (A)	주거지역내 주차면수 (B)	주차 확보율 =B/A*100
2012년			

II. 평가지표

6. 주택 부문 (①주택의 노후 정도)

평가대상	노후주택률(총 주택수 대비 노후주택수)		
분석자료	▪건축한 지 30년 이상 된 주택비율(단독, 공동)		
분석기준	2012년 말 기준		
자료출처	지자체, 2012 한국의 사회지표(건축년별 및 주택종류별 주택노후도)		
구분	총 주택수 (A)	노후주택수 (B)	노후주택률 =(B/A)*100
2012년			

6. 주택 부문 (②노후주택의 개선 정도)

평가대상	총 노후주택수(단독, 공동) 대비 개축 · 수선 · 증축 호수(리모델링, 재개발, 재건축 포함)		
분석기준	2011~2012년 준공기준		
자료출처	지자체		
구분	총 노후주택수 (A)	정비주택수 (B)	정비율 =(B/A)*100
계			
2011년			
2012년			

II. 평가지표

6. 주택 부문 [③ 최저주거기준 확보 정도]

평가대상	전체 가구수 대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수
분석자료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 비거주용 건물내주택, 주택이외의 거처
분석기준	2012년 말 기준
자료출처	지자체, 2012 주거실태조사

구분	전체 가구수 (A)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B)	미달가구율 $=(B/A)*100$
2012년			

6. 주택 부문 [④ 저소득가구의 주거안정 정도]

평가대상	전체 가구수 대비 소형주택(60㎡ 이하), 임대주택 비율
분석자료	▪전체 가구수 ▪소형주택수, 임대주택수(중복 제외)
분석기준	2012년 말 기준
자료출처	지자체, 온나라부동산정보

구분	전체가구수 (A)	소형 및 임대주택수 (B)	소형 및 임대주택수 비율 $=(B/A)*100$
2012년			

II. 평가지표

7. 사회·복지 부문 (①보육원·유치원 공급 정도)

평가대상	전체 영유아, 아동수 대비 공립보육원, 공립유치원 수용인원
분석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공립 보육원 수용 영유아수 ▪국공립 유치원 수용 아동수
분석기준	2012년 말 기준
자료출처	지자체, 통계청

구분	전체 영유아·아동수 (A)	국공립 보육원·유치원내 수용 영유아·아동수 (B)	국공립 보육원·유치원 수용비율 $= (B/A) * 100$
2012년			

7. 사회·복지 부문 (②초등학교 공급 정도)

평가대상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
분석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
분석기준	2012년 말 기준
자료출처	해당교육청, 통계청

구분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
2012년	

II. 평가지표

7. 사회·복지 부문 [③ 노인전문시설 공급 정도]

평가대상	전체 노인수 대비 공립노인전문요양원 수용인원
분석자료	▪65세 이상 노인 인구 ▪공립노인전문요양원 수용인원
분석기준	2012년 말 기준
자료출처	통계청

구분	전체 노인수 (A)	공립노인전문요양원 내 수용인원 (B)	공립노인전문요양원 수용비율 =(B/A)*100
2012년			

7. 사회·복지 부문 [④ 의료서비스 수준 정도]

평가대상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수
분석자료	▪해당지역 주민수/총의사수
분석기준	2012년 말 기준
자료출처	통계청

구분	인구수 (A)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 (B)	천명당 의사수 =B/(A/1,000)
2012년			

II. 평가지표

8. 방재 · 안전 부문 (① 자연재해 피해 정도)

평가대상	자연재해에 따른 재산피해액 및 인명피해 정도
분석자료	▪자연재해에 따른 재산피해액, 인명피해 정도
분석기준	2011~2012년 준공기준
자료출처	지자체, 통계연보, 재해연보(소방방재청)

구분	2011년	2012년	계
자연재해 재산피해액 (단위:천원)			
자연재해 인명피해 (단위:인)			

II. 평가지표

8. 방재 · 안전 부문 (②재해예방시설 확충 정도)

평가대상	재해예방시설 설치 및 운영 자원 비율
분석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해예방시설 - 댐 및 저수지 건설, 제방하천 · 관개수로 정비, 방파제 및 방조제 건설, 사방공사 하수도청소, 배수펌프장 점검 및 보수, 기타 저류시설, 차수관 설치 등 - 모든 자료는 사업계획서, 사진, 동영상 등을 첨부하고 필요한 경우 실사 실시
분석기준	2011~2012년 준공기준
자료출처	지자체

구분	지자체 총 자원 (백만원) (A)	재해예방시설 설치 및 운영자원 (백만원) (B)	자원비율 =(B/A)*100
계			
2011년			
2012년			

II. 평가지표

8. 방재 · 안전 부문 (③ 범죄로부터의 안정성 정도)

평가대상	인구 천명당 범죄발생건수
분석자료	▪인구천명당 범죄발생건수
분석기준	2012년 말 기준
자료출처	통계청

구분	인구수 (A)	범죄발생 건수 (B)	천명당 범죄발생 건수 =B/(A/1000)
계			

< 질의응답 >

- (질의기간) `14.5.12(월) ~ 5.30(금) (3주간)
- (질의처) twlee@krihs.re.kr(이메일), 031-380-0485(팩스)
 - 질의는 이메일 또는 팩스로만 가능
- (담당자) 국토연구원 이태웅 연구원(031-380-0298)

감사합니다.